

법이 바뀌면 주민생활도 바뀝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달라진 우리의 생활은 무엇일까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시작됩니다.

I 주민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Before 기존에는 주민들의 권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①지방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②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 ③참정권 정도였죠.

After 이제는 ‘주민 생활에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주체적으로 주민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방자치 원리 강화(제1조) : 목적 규정에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명시.
- 주민의 권리 확대(제17조) : 주민 생활에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I 청구권 기준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Before 원래는 만 19세 이상인 주민만 주민청구가 가능했습니다.

After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등에 있어서도 18세 이상 주민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제21조) : 주민조례발안, 감사청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하향 (만 19세 이상→만 18세 이상)

I 주민이 조례를 직접 발안할 수 있습니다.

Before 기존에는 조례를 발안하기 위해서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해야 했습니다.

After 이제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정 및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제19조) :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폐지 청구가 가능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의무가 더욱 커집니다

I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됩니다.

Before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에 관한 의무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After 이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주민들에게 더욱 투명한 의회 운영을 보여주게 됩니다.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제26조) : 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

I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Before 지방의원이 겸직하지 말아야 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After 겸직금지 대상이 구체화하고 그 신고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됨으로써 지방의원이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의회의 투명성 또한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방의원 겸직금지(제43조) : 겸직금지대상 구체화, 겸직신고 내용 공개

I 의회 표결 방법이 더욱 투명해졌습니다.

Before 그동안 지방의회 표결 방법의 원칙에 관해서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After ‘기록표결제도의 원칙’이 도입되면서 표결 방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세워짐으로써 신뢰를 기반으로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표결 방법의 구체화(제74조) : 표결방식과 기록표결의 예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신설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I 정책지원 전문인력

Before 이전에는 기초의원의 입법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했습니다.

After 모든 지방의회는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의원정수의 1/2 범위로 총원

I 지방의회도 임용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Before 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습니다.

After 이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이 부여됩니다. 이로써 의회 소속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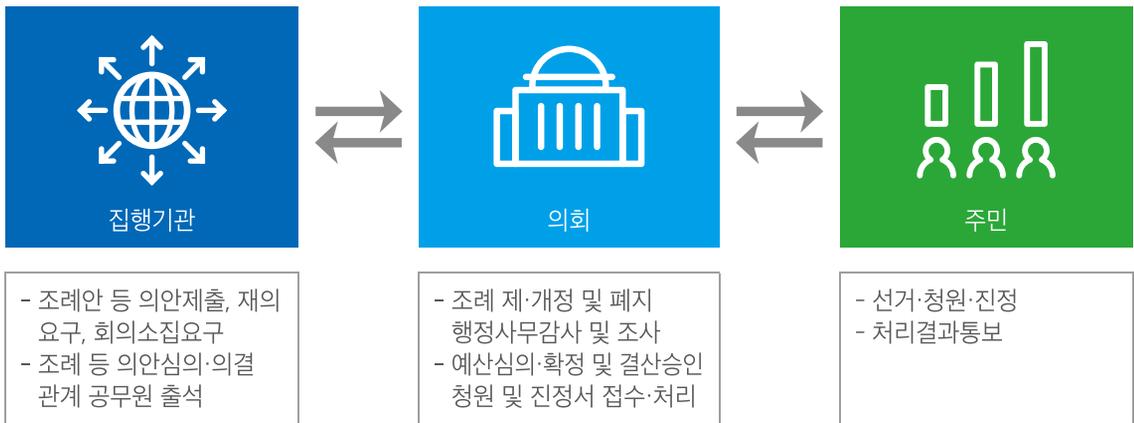
- 지방의원의 인사권 독립(제103조) : 지방의회 소속 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 부여

강릉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 기관으로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따른 제반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지위

주민대표기관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관의 지위를 갖습니다.

입법기관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와 관련한 제반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의 지위를 갖습니다.

감시기관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의 지위를 갖습니다.

의결 기관의 지위

지방의회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의결권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에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서류의 제출과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해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청원수리권

- 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며, 제출된 청원서는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되어 처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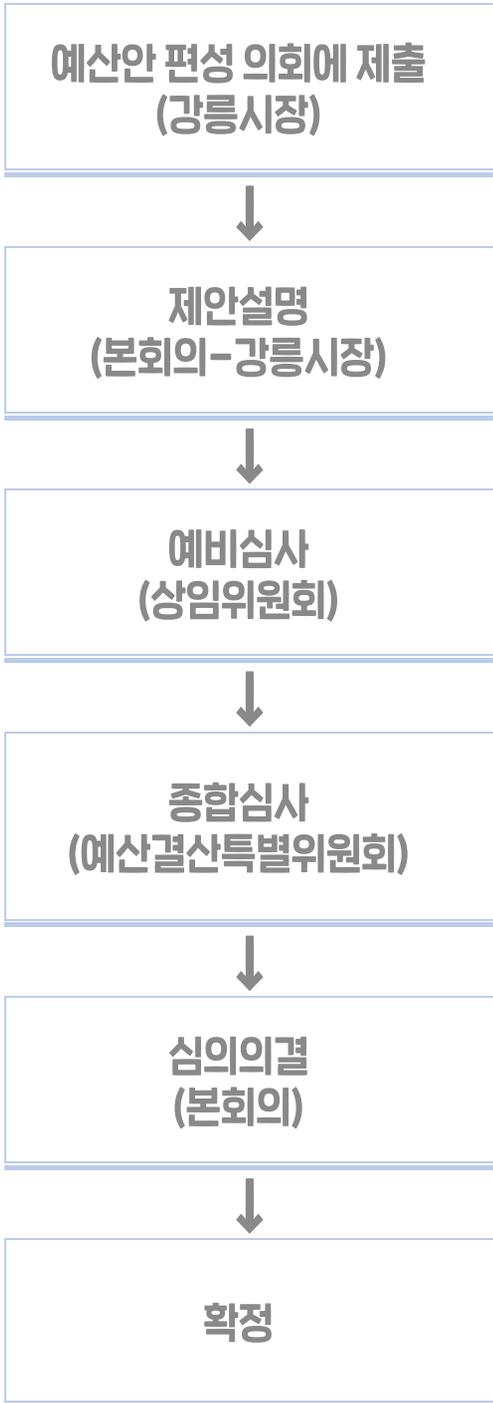
자율권

- 의회의 집회, 의회의 개폐회, 회기를 결정한다.
- 회의 규칙 등 의회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 의원의 자격, 징계 의결 등 의원의 신분을 내부적으로 규율한다.



예산안 처리절차

Budget Handling Procedures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열린마음으로
강릉시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